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서울중앙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김중우
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# 보도자료

2024. 3. 7.(목)

제 목

## 프로야구선수 FA계약 뒷돈 요구, 광고체결 대가 금품수수 ○○프로야구단 前단장, 前감독 수사결과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(부장검사 이일규)는
  - ① 2022. 5.~8. 소속 구단 선수에게 고액의 FA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수차례 요구한 ○○프로야구단 前단장 A(배임수재미수)
  - ② 2022. 7.~10. 선수의 유니폼, 장비 등에 부착하거나, 경기장 펜스 등에 설치하는 광고계약과 관련하여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 6천만원을 수수한 前단장 A와 前감독 B(각 배임수재)
  - ③ A단장과 B감독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6천만원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C(배임증재)를 오늘(3. 7.)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- 이 사건은 선수의 제보와 한국야구위원회(KBO) 수사의뢰(2023. 4.)로 수사가 개시되었고, 검찰은 A단장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수표사용내역 등 단서가 포착되어 면밀히 수사한 결과, A단장 외에 B감독도 구단 운영에 관여하며 광고체결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.
- 이들은 KBO 규약과 야구단 내규가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광고계약을 빌미로 고액을 수수하였고, 받은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 개인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- 앞으로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, 스포츠계의 불법적인 금품수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.

## I

###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#### ① 피고인

- A(50세, 前 야구단 단장), B(50세, 前 감독), C(65세, 외식업체 대표)

#### ② 공소사실 요지

- A단장의 FA 계약 관련 배임수재미수

- 2022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FA 계약을 앞둔 소속 선수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줄테니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세차례 요구하였으나, 선수가 거절하여 미수

- A단장, B감독, C대표의 광고계약 관련 배임수증재

- ① [B감독] 2022년 7월 야구장 내 감독실에서, C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등 광고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6천만원 수수 (배임수재)
- ② [A단장, B감독] 2022년 10월 야구장 내 감독실에서, C로부터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함께 1억원 수수 (배임수재)
- ③ [C대표] 위 ①, ②항 기재와 같이 광고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청탁 대가로 A, B에게 함께 1억 6천만원 제공 (배임증재)

## II

### 주요 수사 경과

- '23. 4. 6. KBO 수사의뢰(피고인 A의 배임수재미수 관련 혐의)
- '23. 4. ~ 11. 참고인 등 조사, 계좌추적(피고인 A, B, C의 배임수증재 혐의 추가 인지)

- '23. 11.~'24. 1. 피고인들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
- '24. 1. 30. 피고인 A, B 구속영장 법원 기각
- '24. 3. 7. 피고인 A, B, C 불구속기소

### Ⅲ 수사 결과

#### □ 철저한 수사를 통해 FA계약체결 대가 요구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

- A단장의 반복적 금품요구에 자괴감을 느낀 선수가 구단에 비위 사실을 알렸고, 구단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KBO가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.
- 해당 선수가 제출한 A단장과의 대화내용 녹음파일에 대하여,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(NDFC)에서 음질개선을 하여 분석한 결과 A단장의 집요한 금품요구 상황을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.

#### □ 계좌추적 등 FA계약 관련 수사과정에서 광고계약 비위 단서 확보

- KBO 수사의뢰 사건 수사 중 A단장의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수표에 대한 자금원 추적 결과, A단장이 C대표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단서를 확보하고,
- 해당 자금에 대한 계좌추적,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단장과 B감독의 배임수재 범행 전모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.

#### □ 유니폼 견장광고부터 펜스 홈런존 신설까지 각종 광고 편의 제공

- A단장은 C대표로부터 야구장 펜스에 해당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홈런존 신설 등의 요구를 받고, C대표의 요구사항을 ○○프로야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, 이후에도 C대표의 각종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.

- B감독은 C대표의 광고계약 희망의사나 홈런존 신설 등 요구사항을 A단장에게 전하는 한편, 구단 광고 담당 직원에게도 C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의 광고 담당 직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하여 광고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.
- 실제 C대표가 운영하는 업체는 ▲야구단이 직접 관리하는 유니폼 견장, 포수 보호장비, 스카이박스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, ▲ 별도 광고대행사가 관리하는 백스탑, 외야펜스 홈런존 광고는 광고대행사로부터 야구단이 광고권한을 매입하여 C대표 운영업체에 재판매하기로 하는 등 C대표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광고패키지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.

#### □ 선수 격려금 명목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개인용으로 착복

- A단장과 B감독은 모두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C대표가 야구단의 열성팬으로서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 명목으로 건네주기에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.
- 그러나, A단장과 B감독은 함께 받은 1억원을 5천만원씩 나누어 가졌고, B감독은 이와 별도로 6천만원을 받았으며, 'KBO 메리트 금지 세척' 등에도 위배되는 금품수수 사실을 구단이나 선수단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나 자녀 용돈, 여행비용, 개인 간의 돈거래 등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.

- '메리트 금지 세척'은 2016년 제1차 KBO 이사회에서 도입된 제도로 선수들에게 연봉 이외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하고, 다만 '선수 개인에게 지급되는 후원사 협찬금, 수훈선수 시상 등에 한하여 개막 이전에 각 구단이 KBO에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'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, 이를 어겼을 경우 해당 구단의 차기 KBO 신인 드래프트의 2라운드 지명권이 박탈되고, 제재금 10억 원이 부과됨[KBO 보도자료 및 KBO 규약 제81조~제83조]
- 해당 프로야구단의 '취업규칙 및 징계규정'에 '직원은 청렴결백하여야 하며, 직무와 관련하여 직·간접으로 사례, 증여 또는 향응 등을 받지 않으며... 금품과 향응의 요구·수수 시 해고 사유가 된다'는 규정이 명기되어 있음